

서울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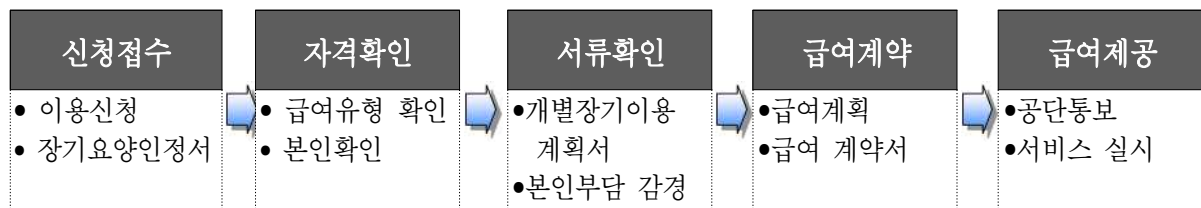
센터의 이용정원은 현재 48명이며,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1. 이용자의 자격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2. 등급외 이용자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수용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제4조 (이용계약 내용)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센터와 수급자 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과기간 :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

자)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요양등급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 3.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을 작성하며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검진서, 복용약(처방전),코로나음성확인서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신원인수인계인(보호자 등)이 계약내용 위반 또는 급여제공에 불만이 있어 합리적인 시정을 요구 시 수용해야 한다.
- ④ 송영 시 어르신을 센터의 종사자에게 인계 및 인수하여야 하며, 자택 도착 시 신원 인수자가 부재 시에는 보호자와 연락하여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며 도착 이후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하여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제6조(계약의 해제)

1.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험이 되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②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③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 ④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를 3회 이상 지체했을 때
2. 수급자의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14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
3. 장기요양기관이 계약해지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8조(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9조(서비스의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②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 ③ 매월 가족이 직접 내방 하여 참여하는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되, 코로나 및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 한다.
3.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① 신체활동지원
 - ② 일상생활지원
 - ③ 정서지원
 - ④ 인지활동지원
 - ⑤ 여가활동지원
 -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4.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급여이용 및 비용의 부담)

1.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청구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자나, 전자메일 등으로 한다.

제11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1.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간호사의 응급조치를 하고 119등의 긴급 차량을 이용하여 약정된 협력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13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14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1.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센터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3.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